



제 417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무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채무조정 시 고려사항에 소상공인 해당여부 포함〉
■ 송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32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기헌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6. 17.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민생 경제를 위하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의 채무조정 관련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채무조정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됨.

2024년 10월 17일에 시행 예정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채무조정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조정과 신속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해당 법률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채무조정 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의 절차 진행에 있어 충분히 고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 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채무조정을 할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33조).

법률 제20054호	개 정 안
제33조(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등의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관리, 추심, 조정 시 준수사항과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 사이의 직접 채무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와 개인금융채권·채무와 관련된 금융

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24년 1월 16일 제정되었으며,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내용 중 하나인 개인금융채무자-채권금융회사 등 간 직접 채무조정이란, 기존의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과 달리,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간 직접 채무조정을 통하여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성공적인 상환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¹⁾

○ 현재 기존 채무조정제도²⁾가 채무자의 재기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소요되는 기간·비용(통상 6~12개월, 법률자문 비용 80~200만원) 및 소액채무 신청 시 기각 가능성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무자 개인의 상황이 반영되기 어려운 일률적 채무조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또한, 채권금융회사등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채무조정은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1) 정무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118931호) 검토보고”, 2023. 2.

2) 제도 개요는 표1 참조

[표 1] 기존 채무자 구제제도 개요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운영주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시행시기	1963.01.	2004.09.	2002.10.	2009.04.	2019.09.
대상채무자	상환불가자 (소득·재산 無)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연체기간 90일이상	연체기간 31일~89일	연체예상 또는 연체기간 30일이하
대상채권	제한없음 ※세금, 건보 료 면책불가	제한없음 ※세금, 건보 료, 사채 등 포함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대부업체포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채무액	제한없음	무담보 10억 담보15억	무담보 5억 담보10억 (사업자30억)	무담보 5억 담보10억	무담보 5억 담보10억
변제기간	-	3~5년	10년 이내 (담보35년)	10년 이내 (담보35년)	10년 이내
채무감면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 책(원금감면 100%)	보유 재산 이상변제 (원금감면 평균70%)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4%) ※상각채권 원금감면 평균61%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원금감면0%)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15% (단,카드10%)
담보대출	제외(별제권)		조정가능	조정가능	조정불가
보증인 독촉여부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법적효력	판결효력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면책결정 후 5년간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간	신용회복 확정 후 2년간	미등록	미등록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이에, 국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개인금융채무자-채권금융회사등 간 직접 채무조정 제도를 법제화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기존 채무조정보다 선제적이고 유연하며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접 채무조정과 기존의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가 채무자 구제체계 내에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채권금융회사등에 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됨.

○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자가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거절하는 경우 수정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에 동의하면 채무조정이 성립됨.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3조는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① 개인금융채무자의 자산, 부채, 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변제능력 ②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비용 ③ 채권금융회사등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④ 그 밖에 채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조정 시 고려사항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최근 경영상황 악화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채권금융회사등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선순환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임.

○ 우리 사회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12.4만 개, 종사자 수는 713.5만명으로(2022년 기준),⁴⁾ 전체 사업체 수의 95.0%, 전체 종사자 수의 45.8%를 차지하여(2021년 기준)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⁵⁾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의 지속과 2021년 시작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채무상환부담이 확대되면서 자영업자대출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⁶⁾ 특히 신규 연체차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연체차주도 연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연체차주 수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등,⁷⁾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음.⁸⁾

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4) 국가통계포털

5)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2023.4.)

6) 2022년 2분기 0.50% → 2024년 1분기 1.52%로 1.02%p 상승하여,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이 0.56%→0.98%(+0.38%p)로 상승한 것에 비하여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7) 자영업자 대출차주의 신규 연체진입률이 2021년말 0.47%에서 2024년 1분기 1.52%로 상승하였고, 연체지속률 역시 같은기간 65%에서 75% 수준까지 상승함에 따라, 자영업자 전체 차주 중 연체차주 비중이 2022년 2분기 기준 1.57%에서 2024년 1분기 기준 4.20%로 크게 상승하였음(같은 기간 가계 연체차주 비중은 1.72%에서 2.31%로 상승).

8)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4.6., 22쪽~26쪽.

- 이에, 개정안과 비슷한 취지에서 2020년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⁹⁾가 이루어져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2022년에는 새출발기금¹⁰⁾을 출범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조정하는 등 관련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인금융채무자-채권금융회사등 간 채무조정은 근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조정”이므로, 채무조정 시 고려사항에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하는 것이 실제로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의 활성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둘째,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상 고려사항에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바 소상공인 해당여부는 이에 포함된다 고 볼 수 있고, 또한 법률상 고려사항에 소상공인 여부만을 명

9)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 협회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하였음. 이를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대출의 만기를 연장받거나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거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상환을 유예하였으며, 그 규모는 2023년 6월말 기준 만기연장 34만명(대출잔액 71조원), 상환유예 1.1만명(대출잔액 5.2조원) 수준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2023. 8. 30.)

10)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한 차주와 2020년~2023년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차주 중 부실차주(3개월 이상 장기연체차주) 또는 부실연체차주(폐업자 등)를 대상으로, 채무자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권을 새출발기금이 직접 매입하여 채무조정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보증기관과 채무자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원금조정, 금리감면,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 부여, 추심중단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3월말까지 약 5.9만명(채무액 9.5조원)이 신청하여 그 중 3.5만명(채무액 2.6조원)에 대하여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 상태임(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시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소상공인 외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따라서, 개인금융채무자-채권금융회사등 간 직접 채무조정 시 고려사항에 소상공인 해당여부를 포함할지 여부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활성화 효과와 입법의 실효성, 타 취약계층과의 구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6